

귀화 허가 흐름도

(국적법 제4조~제7조)

2017. 2. 28. 기준

1

신청 및 접수

출입국관리사무소

- 일반귀화, 간이귀화(혼인귀화 포함), 특별귀화로 구분
-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
 - ※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(www.hikorea.go.kr)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(☎1345)에서 안내
-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 시 수반신청 가능

2

필기시험 및 면접심사

출입국관리사무소

- **필기시험 대상** : 일반귀화, 간이귀화*, 특별귀화
 - * 혼인귀화 신청자는 필기시험 면제(혼인단절자는 필기시험 대상)
- **면접심사 대상** : 일반귀화, 간이귀화, 특별귀화
-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대상자는 「국적법 시행규칙」 제4조 등에 규정
 - ※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

3

귀화 요건 심사

출입국관리사무소

- 필기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체류동향 조사 실시
 - 공 통** 체류실태, 생계유지능력, 범죄경력 등 확인
 - 입 양** 입양의 진정성 등 확인
 - 혼인귀화**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 확인
-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결과,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 요건 심사

4

심사 결정

법무부

- 범죄경력조회,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

5

고시 및 통보

법무부

- 관보고시 및 본인 통지
-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(가족관계등록부 생성)

6

외국국적 포기 등

출입국관리사무소

- 허가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(원칙)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
 -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자는 「국적법」 제10조에 규정
 - ※ 혼인귀화 허가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(혼인단절자는 외국국적 포기 대상)

7

주민등록

- 주소지 읍·면·동 사무소(주민센터)